

2025 - 2학기 입대휴학 신청 세부사항

※ 반드시 본인의 입대 일자에 따라 해당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 요망

1. 신입생

구분	입대 일자	학기 처리
가	9. 30. (화) 이전 (입학일 이전 포함)	입대휴학 처리 가능
나	10. 1. (수) ~ 11. 13. (목)	입대휴학 처리 가능
다	11. 14. (금) ~ 11. 28. (금)	입대휴학 처리 가능
		학기 이수 가능
라	11. 29. (토) ~ 2026. 1. 31. (토)	입대휴학 처리 불가능, 학기 이수해야 함

가. 9. 30. (화) 이전에 입대하는 경우 (입학일 이전에 이미 입대를 한 경우 포함)

- 1) 입학 일자부터 9. 15. (월) 23:59까지 입대휴학(2/3전)을 신청
 - 9. 15. (월) 23:59을 지나서 입대휴학(2/3전)을 신청하면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반환이 불가하며, 신청 기간에 따라 일부만 반환됨

나. 10. 1. (수) 이후, 11. 13. (목) 이전에 입대하는 경우

- 1) 입학 일자부터 9. 15. (월) 23:59까지 일반휴학(사유: 입대 준비)을 신청
 - 9. 15. (월) 23:59을 지나서 일반휴학(사유: 입대 준비)을 신청하면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반환이 불가하며, 신청 기간에 따라 일부만 반환됨
- 2) 11. 13. (목) 23:59까지 입대휴학(휴학중)을 신청
 - 11. 13. (목) 23:59을 지나서 입대휴학(휴학중)을 신청하면,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을 한 것으로 처리되며, 일반휴학 사용 가능 횟수를 1개 사용한 것으로 됨

다. 11. 14. (금) 이후, 11. 28. (금) 이전에 입대하는 경우: 이 경우는 해당 학기를 입대휴학 처리 할 수도 있고, 이수할 수도 있음

- 1) 해당 학기를 입대휴학 처리하고자 할 경우, 입학 일자부터 9. 15. (월) 23:59까지 일반휴학(사유: 입대 준비)을 신청하고, 11. 13. (목) 23:59까지 입대휴학(휴학중)을 신청
 - 가) 9. 15. (월) 23:59을 지나서 일반휴학(사유: 입대 준비)을 신청하면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반환이 불가하며, 신청 기간에 따라 일부만 반환됨
 - 나) 11. 13. (목) 23:59을 지나서 입대휴학(휴학중)을 신청하면,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을 한 것으로 처리되며, 일반휴학 사용 가능 횟수를 1개 사용한 것으로 됨
- 2) 해당 학기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, 수강 신청을 하고, 학기 중 수업을 수강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, 11. 14. (금) 이후로 입대휴학(2/3후)를 신청
 - 입대휴학(2/3후)의 경우, 종강일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했더라도, 입대일 이전의 내용으로 성적을 평가하여 학기 이수가 가능

라. 11. 29. (토) 이후, 2026. 1. 31. (토) 이전에 입대하는 경우: 해당 경우는 입대휴학 처리 불가

- 1) 위 경우 사실상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하며, 학기 이수를 해야함
- 2) 입대일 이전 15일 전부터 입대휴학(2/3후) 신청 가능

2. 재학생

구분	입대 일자	학기 처리
가	8. 1. (금) ~ 9. 30. (화) 이전	입대휴학 처리 가능
나	10. 1. (수) ~ 11. 13. (목)	입대휴학 처리 가능
다	11. 14. (금) ~ 11. 28. (금)	입대휴학 처리 가능
		학기 이수 가능
라	11. 29. (토) ~ 2026. 1. 31. (토)	학기 이수 또는 일반휴학을 사용해야 함

가. 8. 1. (금) 이후, 9. 30. (화) 이전에 입대하는 경우

- 1) 8. 1. (금)부터 9. 15. (월) 23:59까지 입대휴학(2/3전)을 신청
 -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, 9. 15. (월) 23:59이 지나면 입대휴학(2/3전) 신청이 불가하고, 등록금을 납부하면, 9. 15. (월) 23:59이 지났어도 입대휴학(2/3전) 신청이 가능하나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반환이 불가하며, 신청 기간에 따라 일부만 반환됨

나. 10. 1. (수) 이후, 11. 13. (목) 이전에 입대하는 경우

- 1) 8. 1. (금)부터 9. 15. (월) 23:59까지 일반휴학을 신청
 -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, 9. 15. (월) 23:59이 지나면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하고, 등록금을 납부하면, 9. 15. (월) 23:59이 지났어도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하나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반환이 불가하며, 신청 기간에 따라 일부만 반환됨
- 2) 11. 13. (목) 23:59까지 입대휴학(휴학중)을 신청
 - 11. 13. (목) 23:59을 지나서 입대휴학(휴학중)을 신청하면,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을 한 것으로 처리되며, 일반휴학 사용 가능 횟수를 1개 사용한 것으로 됨

다. 11. 14. (금) 이후, 11. 28. (금) 이전에 입대하는 경우: 이 경우는 해당 학기를 입대휴학 처리 할 수도 있고, 이수할 수도 있음

- 1) 해당 학기를 입대휴학 처리하고자 할 경우, 8. 1. (금)부터 9. 15. (월) 23:59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, 11. 13. (목) 23:59까지 입대휴학(휴학중)을 신청
 - 가) 9. 15. (월) 23:59을 지나면,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는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하고, 등록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반환이 불가하며, 신청 기간에 따라 일부만 반환됨
 - 나) 11. 13. (목) 23:59을 지나서 입대휴학(휴학중)을 신청하면,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을 한 것으로 처리되며, 일반휴학 사용 가능 횟수를 1개 사용한 것으로 됨
- 2) 해당 학기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, 수강 신청을 하고, 학기 중 수업을 수강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, 11. 14. (금) 이후로 입대휴학(2/3후)를 신청
 - 입대휴학(2/3후)의 경우, 입대일 이전의 내용으로 성적을 평가하여 학기 이수가 가능

라. 11. 29. (토) 이후, 2026. 2. 28. (토) 이전에 입대하는 경우: 해당 경우는 입대휴학 처리 불가

- 1) 위 경우 해당 학기를 휴학하고자 한다면, 일반휴학 1개를 사용해야 함
 - 가) 이 경우, 8. 1. (금)부터 9. 15. (월) 23:59까지 일반휴학을 신청
 - 나)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, 9. 15. (월) 23:59이 지나면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하고, 등록금을 납부하면, 9. 15. (월) 23:59이 지났어도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하나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반환이 불가하며, 신청 기간에 따라 일부만 반환됨
- 다) 입대일 이전 15일 전부터 입대휴학(휴학중) 신청 가능
- 라) 입대휴학(휴학중)을 신청하지 않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게 될 경우, 일반휴학을 2개 이상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음

* 가능한 입대일 이전 15일 전이 되면 바로 입대휴학(휴학중)을 신청

- 2) 해당 학기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, 수강 신청을 하고, 학기 중 수업을 수강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, 11. 14. (금) 이후로 입대휴학(2/3후)를 신청
 - 입대휴학(2/3후)의 경우, 종강일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했더라도, 입대일 이전의 내용으로 성적을

평가하여 학기 이수가 가능

연 세 대 학 교 대 학 원